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이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그 세부 비율은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조(편입학 등) ①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그 미달 인원을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다음 연도의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미달 또는 선발 학생의 자퇴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료 관련 과정: 다음 각 목의 과정

가.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및 지원 등에 관한 과정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관한 과정

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통합지원 등에 관한 과정

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과정

2. 지역 내 실습과정

3.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및 실습비

3.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학비등의 지원 금액 산정, 지급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하는 경우

2. 유급되는 경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4.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학비등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학비등의 반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xt{감면금액} = \text{반환금} \times \frac{\text{의무복무한 개월수}}{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내

용 및 기간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결과 법 제7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

의과대학 소재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2) 충청북도	건국대, 충북대
3) 광주광역시	전남대, 조선대
4)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 전북대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7) 강원특별자치도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대

[별표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제2조제3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의 소재 지역: 다음과 같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속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이 동일해야 한다.

의과대학 소재지	중학교의 소재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가. 해당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의과대학 소재지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권(여수시)
	전라남도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전라남도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전라남도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권(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경상북도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상북도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북도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상남도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경상남도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권(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나. 해당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의과대학 소재지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3]

의무복무지역(제8조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와 이 영 제2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소재지	의무복무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충청남도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청남도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북도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권(여수시)
	전라남도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전라남도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전라남도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권(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권(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경상북도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상북도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북도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상남도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경상남도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권(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2. 법 제4조제2항제1호와 이 영 제2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의과대학 소재지별 의무복무지역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소재지	의무복무지역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권(여주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주권(경주시, 영

경상북도	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시), 서귀포권(서귀포시)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수련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 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3) 그 밖에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의무복무지역의 지정 기준, 범위, 절차 및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	100	300	500
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 제2항제1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2항제2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20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42